

인정기준적용지침 제1부 (KAB-A-01) 신규조문 대비표

현행 (Issue No.12, 2018. 7. 24.)	개정(안) (Issue No.13, 2018. 9. 17.)	비고
[부속서 A] 심사일수산정 및 인정 수수료의 납부(경영체제 인증기관)	[부속서 A] 심사일수산정 및 인정 수수료의 납부(경영체제 인증기관)	
A.1.1 최초인정심사, 사후관리, 갱신심사, 기타심사	A.1.1 최초인정심사, 사후관리, 갱신심사, 기타심사	
<p>(1) 신청비 (최초 인정심사에 한함) - 기본신청비 2,000,000원 + 경영체제별 1,000,000원</p> <p>※ 신규 인증제도의 도입 후 1년 이내 신청/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신청비를 면제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신 설〉</p>	<p>(1) 신청비 (최초 인정심사에 한함) - (현행과 같음)</p> <p>※ (현행과 같음)</p> <p>※ <u>인정전환의 경우 인정전환 경영체제의 수와 관계없이 기본신청비만 100만원을 청구한다.</u></p>	<p>◦인정전환에 따른 최초 신청비의 부담 경감</p>
A.1.3 등록 및 인정유지비	A.1.3 등록 및 인정유지비	
<p>(1) 최초 및 갱신 등록비 - 기본경영체제 : 경영체제별 4,000,000원 - TL, 녹색, FSSC 등 전문경영체제 : 경영체제별 2,000,000원</p> <p>※ 전문경영체제(TL, 녹색, FSSC 등)에 대한 갱신등록이 품질, 환경, 식품안전 경영체제 인증기관의 갱신일자에 따라 4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경우, 전문경영체제에 대한 갱신등록비용은 인정된 기간(개월)에 대하여만 적용한다.</p> <p>예) 15개월 만에 TL 9000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: 2,000,000원 × 15/48개월</p> <p>※ 해당 인증기관의 경영체제별 갱신등록일자를 통일하기 위해 일부 경영체제의 갱신이 당초 주기보다 당겨지는 경우, 이들 경영체제에 대한 갱신등록비용은 인정된 기간(개월)에 대하여만 적용한다.</p> <p>예) 13개월 만에 환경경영체제 갱신이 이루어지는 경우 : 4,000,000원 × 13/48개월</p> <p>※ <u>KAB로부터 인정받은 인증기관 중 인정받은 해당 경영체제의 일부 인정범위에 대해 타 인정기구의 인정을 전환한 경우 최초 등록비는 면</u></p>	<p>(1) 최초 및 갱신 등록비 - (현행과 같음) - (현행과 같음)</p> <p>※ (현행과 같음)</p> <p>※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〈삭제〉</p>	<p>◦불필요한 조항 삭제 - <u>기 인정 인증기관의 일부 인정범위 전환은 최초 등록이</u></p>

현행 (Issue No.12, 2018. 7. 24.)	개정(안) (Issue No.13, 2018. 9. 17.)	비고
<p><u>제한다.</u> ※ 신규 인증제도의 도입 후 1년 이내 신청/참여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초 등록비를 면제한다.</p>	<p>※ (현행과 같음)</p> <p>※ <u>인정전환에 따른 최초 등록비는 (1) 항에 의한 등록비를 인정전환이 승인된 날로부터 이전 인정기관의 인정유효기간의 잔여기간(개월)에 대하여 월할 계산하여 부과한다.</u></p>	<p><u>아님</u></p> <p>◦인정전환에 따른 최초 등록비의 부담 경감</p>
<p>(2) 인증기관 연간 인정유지비 - 연간매출액의 2.0%를 부과 - <u>최저 인정유지비는 1,000만원으로 하며, 아래와 같은 경우 50%를 감면하여 적용한다.</u> ① <u>KAB 스킴 인증유지 건수가 해당 인증기관 실적의 50% 이상인 경우</u> ② <u>최초인정 후 첫 번째 갱신 또는 인정전환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</u></p>	<p>(2) 인증기관 연간 인정유지비 : 연간매출액의 2.0%. <u>다만, 인정유지비가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을 부과</u></p>	<p>◦최저 인정유지비 인하 - 인정스킴 수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</p>
<p>〈신 설〉</p>	<p><u>부칙 <공고 제2018-42호, 2018.09.17></u></p> <p>1. <u>이 기준은 2018년 9월 17일로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◦부칙 신설 -시행일자 명시</p>